

# 정정 신고 (보고)

2022년 08월 18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  
미래에셋TIGER미국테크TOP10INDXX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21.04.04

3. 정정사유 :

- 1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2) 법 개정사항 반영

4. 정정사항 :

- 1) 투자대상자산 추가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5조 (투자대상자산 등)	① <생략> 6. <신설>	① <생략> 6. <del>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·이자율·지표·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 (이하 "파생결합증권"이라 한다)</del> 가.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나.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

		<del>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</del>
제16조 (투자 대상자산 취득 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른다. 1.~5. <생략> <del>6.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 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 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% 이하 가 되도록 한다.</del>	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른다. 1.~5. <생략> <del>6.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 및 파 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을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% 이하로 한다</del>

## 2) 법 개정사항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5조 (투자대상자산 등)	① <생략> 2. <중략> <del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사법 또는&lt;생략&gt;</del> 3. <중략> <del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사법 또는&lt;생략&gt;</del>	① <생략> 2. <삭제> 3. <삭제>